[별표 2의2] <개정 2013.7.2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구분	구 비 요 건
1. 시설 기준	가. 강의실 면적: 100㎡ 이상 나. 사무실 면적: 16㎡ 이상 다. 휴게실 면적: 10㎡ 이상
2. 강사 기준	가. 전임강사(1명 이상)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간강사(3명 이상)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3. 연수 실적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